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4월 15일, 한병도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4월 1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5.7.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9.) 상정, 축조심사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1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5.12.16.)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한병도의원)

현행 법률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오는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이 예정돼 있음. 국토교통부의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택자가 보유율은 60.7%로 전년 대비 0.6% 하락했고, 수도권 중심 주택 가격 상승으로 주거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아울러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 과정에서 국가의 비용 부담 경감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당 조항의 일몰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무주택자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제36조의5).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감면 연장)

현행법은 주택 취득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원 미만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다음 조건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당초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 주택의 종류와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에서 취득세액을 감면하였으나, 2024.12.31.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일정 면적 이하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주택 등 소형주택에 대한 감면한도가 상향되었음.

한병도의원안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이는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주택 구입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개정안 심사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 뒤 매 3년마다 그 효과 등을 검토하고 일몰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출산·양육용 주택에 대한 감면 연장)

현행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할 때 500만원 한도로 취득세의 100%를 감면하고 있음.

이는 2023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당시 도입된 특례로, 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 마련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신설되었음.

한병도의원안은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현재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 뒤 매 3년마다 그 효과 등을 검토하고 일몰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